

# 국어사전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 보고서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

## 들어가는 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21년 8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인터넷 포털의 어학사전 내 표제어, 용례에 대한 차별·비하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국어학자, 아나운서, 인권위원, 법학자 등 관련 분야의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학사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출범하였다.

KISO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2009년 설립한 국내의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인데, 자문위도 어학사전의 표제어나 용례의 차별·비하적인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보호라는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였다.

자문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어학사전의 차별·비하적인 표현 처리에 대한 「어학사전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언어생활 보호, 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저작권 보호 등의 원칙을 수립하고, 사전내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조치방법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국어사전 서비스 안에서 차별·비하적인 요소를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장애’와 ‘인종·출신국가’ 관련 표현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알림 표시를 적용했다.

이후 자문위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팀(팀장 김상민)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도입했고, 1만여 표제어에 대한 차별·비하 검토를 완료했다. 모든 개별 단어에 대해 말뭉치 혹은 빅데이터 자료를 조사하여 차별·비하 예문 비율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판단을 더했다.

이번 작업은 인터넷 포털이 어학사전 이용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선언적 단계에서 나아가 개별 표제어 수준에서 차별·비하적 쓰임을 검토하고 계량적 판단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많은 과제를 남긴다. 이번에 검토한 1만여개 단어는 국어사전 편찬자가 뜻풀이에서 ‘낮잡아 이르는, 알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 차별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비롯해 표제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예문, 속담, 연관 단어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개별 표제어를 검토한 결과 그 기준이 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요소도 발견하였다. 통상적으로 차별·비하표현, 나아가 혐오표현을 볼 때 집단에 대한 차별 여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가이드라인은 차별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체성 요소로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표제어 검토 결과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도 포함됐다.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습관과 감수성을 고려하여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차별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언어 사용, 특히 사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사전은 풍요로운 언어의 보고로서 그 쓰임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업은 차별과 비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

는 국내 대표적인 포털의 노력의 일환이며, 사전 속 차별·비하 표현 논의에 대한 시작점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차별·비하 표현으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이용자들이 차별·비하 표현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다면 남겨진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

황창근(위원장), 강재형, 김민호, 유현경, 윤석희, 정필운(이상 위원)

## <차례>

1. 서론 .....	5p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5p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5p
1.2.1. 연구 대상 .....	5p
1.2.2. 연구 방법 .....	6p
2. 기본적 논의 .....	8p
2.1. 차별·비하 표현의 개념 .....	8p
2.2. 차별·비하 표현 판단의 기준 .....	9p
3.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 결과 .....	13p
3.1.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 .....	13p
3.2.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	13p
3.3.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	13p
3.4.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	14p
3.4.1. 사회적 취약 계층 관련 표현 .....	14p
3.4.2. 인종·출신지 관련 표현 .....	15p
3.4.3. 성적 대상 관련 표현 .....	15p
3.4.4. 성별 관련 표현 .....	15p
3.4.5. 종교 관련 표현 .....	16p
3.4.6. 나이 관련 표현 .....	16p
3.4.7. 외모·차림새 관련 표현 .....	16p
3.4.8. 능력·직업 관련 표현 .....	16p
3.4.9. 성격·습성 관련 표현 .....	17p
3.4.10 그 밖의 표현 .....	17p
4. 결론 .....	17p
<참고문헌> .....	19p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전 표제어와 용례의 차별·비하 표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문화 특징 등의 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어학사전 속 차별·비하표현을 평가하고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과 비하가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가 언어를 통해 표출된다. 언어를 통해 표출되는 차별과 비하는 그 자체로 표현의 대상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조태린 2011: 388).

오늘날,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대중들의 감수성이 높아지며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법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어학의 역할 또한 존재할 것이다. 차별·비하 표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학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사전에서 특정 표현이 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전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특정 단어에 차별·비하 표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이 그러한 표현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터넷 사전에서 차별·비하 표현을 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표현은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가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 단어들은 1차적으로 명사로만 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주요하게 서비스되는 한국어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우리말샘>(이하 <말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의 풀이에서 차별·비하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패턴을 가진 단어들로 선별하였다.

- (1) 낮잡는, 낮잡는 뜻으로, 낮잡아 이르는, 놀림조로, 비난조로, 비속하게, 비속하게+욕하여 이르는, 상스러운 말로, 속되게, 속되게+얕잡아 이르는, 속되게+욕하여 이르는, 속된 말로,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얕잡아 이르는, 욕하는, 욕하는+낮잡아 이르는, 욕하여 이르는, 홀하게 이르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단어는 총 10,779개이다.

이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 단어를 2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첫째,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단어만 선별하였다. 어학사전 자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격권과 평등권을 존중하여 사전의 표현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어들은 인간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 ‘개나발1-11)(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헛소리나 쓸데없는 소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고무신짝1-2(‘고무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 등은 대상 단어에서 제외된다.

둘째, 고빈도 단어만을 선별하였다. 1차적으로 선발된 10,779개의 단어들 중 상당수가 현대 국어 생활에서 쓰이지 않아 검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때, 고빈도 단어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빈도 조사 연구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보고서2(국립국어원 2005)와 한국어의 기초 어휘들을 등재하고 있는 사전인 <한국어 기초 사전>, 5만 2천 개의 주요 한국어 단어를 등재하고 있는 사전인 <연세 한국어 사전>을 활용하였다. 위 세 자료에서 한 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 단어들은 한국어에서 중요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로 판단하고 대상 단어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기준 사전들에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단어만을 선별하였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터넷 사전에서 대부분의 비표준어는 사전의 뜻풀이가 별도로 노출되지 않고 서비스상에서 표준어로 안내(예: 먹눈→소경)하고 있으므로 표준어에서 차별·비하 표현 주의 알림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690개의 단어를 최종 검토 대상 단어로 확정하였다.

## 1.2.2. 연구 방법

1.2.1.에서 선별된 최종 검토 대상 단어에 대하여 차별·비하 표현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기준 사전인 <표준>, <말샘>, <고려>의 뜻풀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 대상 단어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카테고리는 기존 연구들(조태린 2006, 이정복 2007, 2009, 2010, 안상수 2007, 임영철 2008, 박재현 2009, 박은하 2009, 박은하 2018 등)에서 주로 다루었으며, KISO 어학사전 가이드라인 상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 종교,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기타’로 나누었고, 기타로 분류된 단어들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개인, 자기 자신, 외모/차림새, 능력, 성격/습성, 경제적 지위, 신분적 지위’로 더욱 자세하게 나누었다.

다음으로 검토 대상 단어가 차별·비하 표현으로 쓰이는지 여부를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살펴보기 위하여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확인하였다. 말뭉치는 주로 국립국어원이 배포한 <모두의 말뭉치\_어휘의미분석 말뭉치(392만 어절)>를 사용하였고, 여기에서 예문이 충분히 검색되지 않는 경우 <세종 말뭉치\_형태분석 말뭉치(1000만 어절)>와 <모두의 말뭉치\_형태분석 말뭉치(300만 어절)>를 사용하였다. 또한 말뭉치에서 예문이 확인되지 않는 단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예문을 살펴보았다.

말뭉치에서는 기본적으로 100만 어절당 출현 빈도와 차별·비하 예문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만약 말뭉치에서 예문이 지나치게 많이 검색되어 모든 예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00만 어절당 출현 빈도와 차별·비하 예문의 비율은 ‘확인한 예문을 기준으로 구한 수치+a’로 작성하였다. 또한, 동형어의 예문이 많이 검색되어서 검토 대상 단어에 해당하는 소수의

1) 단어의 어깨번호와 뜻번호는 표제어 수가 가장 많은 <말샘>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는 표제어 옆 괄호 속에 어깨번호와 뜻번호의 기준으로 삼은 사전을 적어 두었다.

예조차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확인 불가’로 작성하였다. 확인된 예문 중 차별·비하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문 3~4개와, 비차별·비하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문 3~4개를 각각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자료에서의 긍정/부정/중립 비율 또한 확인하였다. 이 자료는 썬트렌드(<https://some.co.kr/>)에서 ‘인스타, 블로그, 뉴스, 트위터’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간 기준 단어의 연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긍·부정 분석을 통해 구하였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국어학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판단 근거 자료를 작성하였고,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차별·비하 표현을 확정하였다.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차별·비하의 정도가 높은 것부터 A, B, C, 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C 등급은 차별·비하 표현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C+와 C, C-로 더욱 세분하였다. 다음은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표의 예시이다.

<표1. ‘갈보1-1’에 대한 차별·비하 표현 판단 표>

● 갈보1-1

카테고리	성별	
사전 풀이	우리말샘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고려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계량적 자료	차별·비하 표현 예문 비율	95.5%
	100만 어절당 출현 빈도	1.6
	빅데이터 긍정/부정/중립 비율	46.2%/52.6%/1.2%
예문	차별·비하 예문	1) 달 때는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쓰니까 뺄어? 이 흉악한 갈보년 같으니라고..... 2) 이 미친년, 이 걸레 같은 년..... 어느놈하고 붙어먹었어, 이 갈보년아. 3) 하긴 박 주사의 사정이 딱하기야 하지요. 그래도 어쩔 것이지요? 나도 더는 남의 사정 보다가 갈보 안 될 참이오.
	비차별·비하 예문	1) 행운의 편지란 건 너무 갈보처럼 떠도는 게 망조지만, 그렇게 폐쇄회로를 만들어서도 안 돼.
판단	판단 결과	A
	판단 근거	1) 차별·비하 예문의 비율이 95%로 매우 높음. 비차별·비하 예문은 단 하나 나타나는데, ‘갈보’의 ‘떠돈다’는 속성이 부각된 비유 표현임. 그러나 ‘갈보’를 비유할 때 ‘떠돈다’라는 속성이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쓰임이 많을 것 같지 않음. 2) 의미번호가 하나인 단어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듯한데, 빅데이터 자료에서 ‘갈보1-1’의 부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제안사항	‘갈보’가 포함된 ‘양갈보’ 역시 차별·비하 표현일 가능성 있음.	

## 2. 기본적 논의

### 2.1. 차별·비하 표현의 개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차별·비하 표현의 개념은 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혐오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어로서의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만 법학 용어인 ‘혐오표현’에서의 ‘혐오’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홍성수 2018: 24,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 법학 용어로서의 ‘혐오표현’은 ‘hate speech’의 역어로(김민정 2014: 135), 여러 선행연구(박동근 2010, 김민정 2014, 2020, 문연주 2014, 박해영 2015, 홍성수 2015, 2018, 국가인권위원회 2019 등)를 참고했을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부른다.

(3) 가. 소수자 집단이나,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나.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혐오가 아니라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등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혐오를 표출하는 표현

위 조건에 따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혐오를 표출하는 욕설은 혐오표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법학 용어로서의 혐오표현은 일상어로서의 혐오표현에 비해 상당히 좁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학에서 혐오표현을 상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혐오범죄(hate criminal)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sup>2)</sup> 혐오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혐오표현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등의 형사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비교적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혐오표현을 법학 이외의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법학 외의 분야에서는 혐오표현 발화자의 형사적 처벌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3)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일상어로서의 혐오를 표출하는 욕설과 같은 표현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감수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학의 연구가 차별 표현(이정복 2007, 2009, 2010, 박재현 2009, 박혜경 2009, 조태린 2011, 2019, 송현주 2021), 비하 표현(장경현 2021), 비속어(김정선 외 2013, 이선영 2015, 허재영 2011), 비어(박재연 2017), 욕설(장경희 2010) 등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별하고자 하는 표현 역시 법학 용어로서의 혐오표현보다 그 범위가 넓다. 본고는 이를 차별·비하 표현이라고 부르며, 이때의 ‘차별’과 ‘비하’는 일상어로서의 차별과 비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혐오표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유색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부터이다(박해영 2015: 139).



## 2.2. 차별·비하 표현 판단의 기준

특정한 표현이 차별·비하 표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크게 1차 기준과 2차 기준으로 나뉜다. 1차 기준에 의해 걸러진 단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차 기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두 일관된 판단을 내렸다. 그만큼 1차 기준은 강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1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차별·비하 표현 판단의 1차 기준>

	기준	판단 결과
가	쓰임이나 언어 직관이 없는 표현	차별·비하 표현 x
나	비표준어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	
라	자기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비하 표현 o
바	사람의 인종이나 출신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	

<표2가-라>의 기준에 의해 걸러지는 표현들은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표2가>의 ‘쓰임이나 언어 직관이 없는 표현’은 설령 차별·비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때, ‘쓰임이 없다’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말뭉치에서의 예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소수만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고, ‘언어 직관이 없다’는 판단은 연구팀 구성원 3명의 언어 직관을 근거로 하였다. 말뭉치에서 예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연구팀 구성원들이 언어 직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언어 직관이 없더라도 말뭉치에서 예문이 일정 수준 이상 발견되어 이를 근거로 판단을 진행한 경우(예: 논다니1-1)도 있다.

<표2나,다>의 ‘비표준어’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 또한 모두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2라>의 ‘자기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또한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등을 낮잡아, 또는 알잡아 이르는 것은 차별·비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인 겸양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2마-바>의 기준에 의해 걸러지는 표현들은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먼저, <표2마>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시하는 말은 차별과 비하의 맥락에서 사용되기 매우 쉬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한 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낮잡아 또는 알잡아 이르는 말은 지시 대상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표2바>의 ‘사람의 인종이나 출신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전형적인 인종 차별적 표현과 관련된다. 사람의 인종이나 출신지는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될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낮잡아 또는 알잡아 이르는 행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로 이어져, 다른 민족이나 문화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의 인종이나 출신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표2가, 나>는 <표2다-바>의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그 층위가 다르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표2가, 나>는 언어 표현이 실제 대화에서 발화되는지의 여부와 언어 표현이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표2다-바>는 언어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쓰임이나 직관이 없거나(<표2가>) 비표준어여서(<표2나>) 차별·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볼 만한 표현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표2마>) 사람의 인종이나 출신지를 대상으로 하여(<표2바>) 차별·비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이 연구의 대상 단어들 중에는 1차 기준만으로는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단어들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2차 기준을 활용하여 차별·비하 표현 여부를 판단하였다. 2차 기준은 1차 기준만큼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러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3. 차별·비하 표현 판단의 2차 기준>

	기준 분류	기준
가	계량적 기준	말뭉치에서 차별·비하 표현으로 쓰인 비율
나		빅데이터 자료에서의 긍정/부정/중립의 비율
다	맥락적 기준	차별·비하의 감정이 수식어에 의해 표현되는가?
라		자기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가?
마	기타 기준	중립적인 대체 표현이 존재하는가?
바		비유에서 강조되는 속성이 부정적인가?
사		의미가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들이 차별·비하 표현인가?
아		단어의 구성요소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자		기준 사전(<표준>, <말샘>, <고려>) 모두에서 차별·비하의 뜻풀이를 하는가?

계량적 기준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표3가>의 ‘말뭉치에서 차별·비하 표현으로 쓰인 비율’을 살펴보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 단어들이 실제 쓰임에서 차별·비하의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단어가 차별·비하 표현이라면 차별·비하의 쓰임이 그렇지 않은 쓰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판단 과정에서 <표3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말뭉치가 한국어 사용의 모든 상황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 대상 단어의 빈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고, 검토 대상 단어가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경우 발견된 예문만으로 해당 단어의 차별·비하 표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쓰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둘째, 특정 단어가 차별·비하의 맥락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가 해당 단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다양한 맥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차별·비하의 의미가 주로 맥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뭉치에서 차별·비하 표현으로 사용된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표3가>는 차별·비하 표현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이 아니라 2차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3나>의 ‘빅데이터 자료에서의 긍정/부정/중립의 비율’ 또한 계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차 기준에 포함된다. 이때 ‘빅데이터 자료에서의 긍정/부정/중립의 비율’이란 ‘인스타그램

램, 네이버 블로그, 뉴스, 트위터’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간 기준 단어의 연어를 분석하여 해당 단어의 긍·부정성을 판단한 것이다. 특정 단어가 차별·비하 표현이라면 빅데이터 자료에서 부정의 비율이 긍정의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표3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첫째, 이 자료는 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어계번호와 뜻번호가 단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어계번호와 뜻번호가 둘 이상이라면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 외의 의미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단순히 연어 관계만으로는 특정 단어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걱턱1-1’의 경우 ‘주걱턱을 개선하다’와 같은 예문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주걱턱1-1’은 ‘개선하다’와의 연어 관계 때문에 긍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주걱턱을 개선하다’에서 ‘주걱턱’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3나> 역시 차별·비하 표현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이 아니라 2차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계량적 기준들은 결국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에야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즉, 특정 예문이 차별·비하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인 경우, 그러한 의미가 대상 단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맥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뭉치에서 발견된 예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맥락적 기준이 필요하다.

<표3다>의 ‘차별·비하의 감정이 수식어에 의해 표현되는가?’는 그러한 맥락적 기준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아이1-4’의 예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권좌에 “미숙한 아이”가 앉아 있다며’와 같은 예문이 등장한다. 해당 예문이 차별·비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때의 차별·비하 의미는 ‘아이1-4’ 자체가 아니라 ‘미숙한’과 같은 부정적인 수식어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예문이 등장한다고 해서 ‘아이1-4’를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3라>의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가?’ 또한 맥락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차별·비하 표현 판단의 1차 기준이었던 <표2라>와도 관련 있는 기준이다. <표3라>의 기준이 <표2라>와 다른 점은, <표2라>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단어는 맥락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지시하는 반면 <표3라>는 해당 예문의 맥락 속에서만 자기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2라>와 관련된 표현인 ‘자식새끼1-1(자기의 아들과 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차별·비하 표현이 아니라 겸양 표현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표3라>와 관련된 표현인 ‘할망구1-1(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은 ‘손자를 얻은 나는 분명히 할망구였다.’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별·비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예문에서 ‘할망구1-1’이 차별·비하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단어 자체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특수한 맥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기준이 존재한다. <표3마>의 ‘중립적인 대체 표현이 존재하는가?’는 허재영(2011: 117), 이선영(2015: 70), 박재연(2017: 173) 등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해당 어휘의 비어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기준이다. 중립적인 대체 표현이 없는 경우, 대상을 중립적으로 지시하는 맥락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이선영 2015: 71) 대상 단어를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대체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도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분수2-1(몸집에 비하여 머리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는 별다른 대체 표현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표현으로 비하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체 표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병어리1-1(‘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은 사전 풀이상 ‘언어 장애인’이라는 대체 표현이 존재하지만, ‘병어리1-1’ 대신 이러한 대체 표현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애꾸1-2(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경우 언어 사용자는 ‘애꾸’라는 단어를 발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눈이 불편한 사람’과 같은 통사적 구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체 표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표3바>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속성이 부정적인가?’는 대상 단어의 의미가 비유를 통해 성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많은 어휘들은 은유적 쓰임이 존재하는데, 은유적인 쓰임이 하나의 의미로 굳어져서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은유에서는 단어가 가지는 속성들 중 일부만 부각되게 된다(Kovecses 2010). 예를 들어 ‘돌2-8(두뇌 회전이 잘 되지 않아 둔하거나 나쁜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에서는 ‘돌’의 속성 중 ‘둔하다’는 속성이 강조되고, 여기서 확장되어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에서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타인을 지칭하는 경우, 청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개코1-2(냄새를 잘 맡는 코나 그런 코를 지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에서는 ‘냄새를 잘 맡는다’는 속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속성은 부정적인 속성이 아니므로 청자에게 모욕감을 줄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3사>의 ‘의미가 관련 있는 다른 단어들이 차별·비하 표현인가?’는 유의어나 반의어와 같은 관련어가 있는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러한 관련어들이 차별·비하 표현이라면 검토 대상 단어 또한 차별·비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다니1-1(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는 <표준>에 따르면 ‘갈보1-1’과 유의 관계를 이루는데, ‘갈보1-1’이 차별·비하 표현이므로 ‘논다니1-1’ 역시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표3아>의 ‘단어의 구성요소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는 단어가 복합어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복합어의 구성요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면 검토 대상 단어 또한 차별·비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장사꾼1-1(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낮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는 의미인 ‘-꾼2-5’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다. ‘장사꾼’의 구성 요소인 ‘-꾼2-5’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사꾼1-1’ 또한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표3자>의 ‘기준 사전(<표준>, <말샘>, <고려>) 모두에서 차별·비하의 뜻풀이를 하는가?’는 본 작업에서 참고한 사전들에서 서로 다르게 뜻풀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작업의 대상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준 사전들의 풀이에 ‘낮잡아, 얕잡아’와 같은 특정 패턴이 있는 단어들이다. 사전의 풀이는 대상 단어에 대한 사전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 <말샘>, <고려> 중 일부 사전의 풀이에서 ‘낮잡아, 얕잡아’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전은 그러한 단어가 차별·비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상 단어가 차별·비하 표현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3.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 결과

#### 3.1.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은 차별·비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어들은 인간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3.2.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중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주로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이들 대부분은 차별·비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낮잡아, 또는 얕잡아 이르는 것은 차별·비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인 겸양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3.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표현 중에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존에 혐오표현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차별·비하 표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감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논의에서는 이들 또한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에는 비속어나 개인을 가리키는 직시(deixis) 표현, 특정인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포함된다. 비속어의 경우 지시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강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대부분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시 표현이란 맥락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말로<sup>3)</sup> 대명사나, 지시사 ‘이, 그, 저’를 포함한 말, 또는 다른 말과 결합해야만 의미가 완성되는 의존 명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시 표현의 경우, 차별·비하 표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차별·비하 표현인 단어들은 주로 ‘것, 년, 놈, 작자, 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를 포함하고 있고,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단어들은 주로 ‘자, 양’과 같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를 포함한다. ‘것1-2(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예문에서는 ‘귀여운것들’처럼 수식하는 말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직시(deixis)는 가리키다(pointing) 또는 지시하다(indicating)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지시사나 대명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Levinson 1983: 54).

### 3.4.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특정한 집단과 관련을 가진다. 이때의 집단이란 여럿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 모임으로서의 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태어나면서 부여된 성별로 인해 ‘여성’ 집단으로 묶일 수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에 관한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다루는 차별·비하 표현들은 기존에 다루어져 오던 혐오표현과 많은 부분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장에서의 차별·비하 표현이 혐오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첫째,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을 특징짓는 특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에게 부여되었고 변경이 불가능한(김민정 2014: 148) 속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과 관련한 표현 등은 차별·비하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해도 혐오표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한 차별과 비하가 존재하고 이를 표출하는 표현이 청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이를 차별·비하 표현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또한 차별·비하 표현으로 다루었다.

둘째,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다수자 집단에 속하는 ‘남성’에 대한 표현 등은 혐오표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남성 혐오는 그러한 표현을 듣는 남성이 기분이 언짢을 뿐, 여성 혐오와 같이 남성을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하거나 일상적인 공포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으로 볼 수 없다(홍성수 2018: 44)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의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는 더이상 소수자 집단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고(조태린 2018: 98), 사회적 약자가 나타내는 혐오표현도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다(박해영 2015: 141)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다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역시 차별과 비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차별·비하 표현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이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대상 단어들을 하위 분류하였다. 본장의 하위 분류는 ‘사회적 취약 계층 관련 표현’, ‘인종·출신지 관련 표현’, ‘성적 대상 관련 표현’, ‘성별 관련 표현’, ‘종교 관련 표현’, ‘나이 관련 표현’, ‘외모·차림새 관련 표현’, ‘능력·직업 관련 표현’, ‘성격·습성 관련 표현’, ‘그 밖의 표현’으로 총 10가지이다.

#### 3.4.1. 사회적 취약 계층 관련 표현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단어에는 장애인을 나타내는 표현,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표현, 신분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표현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낮잡아 또는 얕잡아 이르는 말은 지시 대상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별·비하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4.2. 인종·출신지 관련 표현

사람의 인종과 출신지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인종에 대한 표현, 출신 국가에 대한 표현, 출신 지역에 대한 표현이 존재한다.

인종이나 출신지를 기준으로 타인을 낮잡아 또는 얕잡아 이르는 말은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로 이어져, 다른 민족이나 문화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다만 출신 국가 관련 표현 중 ‘왜경1-1, 왜군1-1, 왜병1-1, 왜왕1-1, 왜장1-1’은 주로 과거에 쓰이던 역사적 표현인 동시에 이들을 대체할 단어가 없다고 판단되어 차별·비하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 3.4.3. 성적 대상 관련 표현

‘성적 대상’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단어에는 지시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표현’과 ‘성적 대상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보는 표현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성별 관련 표현’으로 크게 묶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적 대상을 갈망하는 사람’의 경우 그 속성이 성별이라는 타고난 특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망과 관련하여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성별 관련 표현’과는 구분하였다.

지시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표현’은, 인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표현으로 청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지시 대상을 ‘성적 대상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보는 표현’ 또한 청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청자를 성적 욕망에 휩싸여 타인을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 대상 관련 표현(예:갈보1-1, 논다니1-1)은 모두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 3.4.4. 성별 관련 표현

‘성별’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단어에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과 성 역할을 고정하는 표현, 성별을 중립적으로 지시하는 표현 등이 존재한다.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은 주로 ‘년, 놈, 계집’과 같이 성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대부분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되었다.

성 역할을 고정하는 표현에는 첩이 존재했던 과거의 문화를 반영하는 표현(작은계집1-1),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인식하는 표현(돌계집1-1),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표현(부엌데기1-1)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여성과 관련한 단어라는 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받아온 차별과 비하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4.5. 종교 관련 표현

‘종교’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단어에는 특정 종교의 신자와 관련된 표현이 존재한다. 이는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땡추1-1, 예수쟁이1-1)들이다.

#### 3.4.6. 나이 관련 표현

‘나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단어에는 나이 적음과 관련된 표현과 나이 많음과 관련된 표현이 존재한다. 나이 적음과 관련된 표현에는 주로 대상의 버릇없음, 치기어림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았고, 나이 많음과 관련된 표현에는 주로 대상의 쓸모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한편 나이와 관련 있지만 대상을 중립적으로 지시하는 표현들(갓난쟁이1-1, 아이1-4)도 존재한다.

#### 3.4.7. 외모·차림새 관련 표현

외모와 차림새와 관련한 단어들은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부류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류에는 외모와 관련된 표현과 차림새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다. 이 표현들은 주로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을 회화화하는 것들로, 차림새와 관련된 단어의 수(5개)보다는 외모와 관련한 단어의 수(60개)가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차림새는 대상의 자유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반면, 외모는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모의 특징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차림새 관련 표현들은 대부분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되지만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중립적으로 지시하는 표현(털보1-1, 장발족1-1)들도 일부 발견된다. 또한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차별·비하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쓰임이나 언어 직관이 없는 단어들(고석박이1-1)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3.4.8. 능력·직업 관련 표현

직업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누군가의 직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능력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업을 차별·비하함으로써 직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을 차별·비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능력에 관한 표현과 직업에 관한 표현을 하나의 부류로 묶었다.

능력에 관한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대상의 어리숙함이나 아둔함, 무식함 등을 나타내 능력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주를 이루었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 또한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 능력에 대한 비하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비하 표현으로 판단된다.

직업에 관한 단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꾼2-5’나 ‘-쟁이2-3’과 같은 접미사를



가진 단어가 많다는 것이다. ‘-꾼2-5’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낯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쟁이2-3’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런 사람을 낯잡아 이를 때 쓴다.’로,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차별·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직업에 관한 단어 중 일부는 특정 직업을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차별·비하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도 접미사 ‘-꾼’을 가진 경우(소몰이꾼1-1, 과거꾼1-1)가 있는데, 이때의 ‘-꾼’은 ‘-꾼2-2’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는, 차별·비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접미사로 보인다.

#### 3.4.9. 성격·습성 관련 표현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의미한다. 반면 습성은 습관이 되어 버린 성질이라는 뜻으로, 성격과는 달리 대상의 반복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이 특정한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격과 관련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하나의 분류로 묶일 수 있다.

이때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의 구성요소가 부정적이라면 대부분 차별·비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 3.4.10 그 밖의 표현

이 밖에도 지금까지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단어(빚쟁이1-1)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차별·비하 표현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통해 약 700여개의 대상 단어에 대한 차별·비하 표현 여부의 판단을 진행하였다. 약 700여개의 단어만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모든 차별과 비하의 표현을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어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위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판단의 필요성이 큰 단어들에 대한 검증은 우선적으로 끝마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판단의 기준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모든 단어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차별·비하 표현을 판단하는 일은, 차별·비하 표현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차별·비하 표현의 특징이나 대안 표현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차별·비하 표현 여부의 판단 문제에는 비교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빈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를 통해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비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노

력해야 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지금, 온라인을 통해 차별과 비하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터넷 포털의 역할 또한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터넷 사전에 적용되어 공개된다는 것은 이 작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인터넷 포털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자들이 차별·비하 표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 연구의 결과물이 큰 의의를 갖지만 앞으로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보고서2』, 국립국어원.
- 김민정(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법』 13(2), 131-163.
- 김민정(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7-54.
- 김정선 · 이필영 · 김태경 · 이삼형 · 장경희 · 전은진(2013), 「청소년의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조사」, 『국어교육』 140, 153-181.
- 문연주(2014),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89-124.
- 박동근(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57-88.
- 박은하(2009), 「한국 전래 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아시아여성연구』 48(1), 7-29.
- 박은하(2018),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사회언어학』 27(4), 89-116.
- 박재연(2017), 「한국어 줄임말 비어의 어휘론과 화용론」, 『한국어 의미학』 56, 161-188.
- 박재현(2009), 『사회적 의사소통연구; 지역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 박해영(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137-169.
-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송현주(2021), 「차별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53, 129-159.
- 안상수(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이선영(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64, 59-80.
- 이정복(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257-300.
- 이정복(2009), 「한국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표현」, 『텍스트언어학』 27, 215-244.
- 이정복(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1-36.
- 임영철(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현(2021), 「신조어 비하 표현의 특성 연구」, 『우리말글』 90,1-24.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401-427.
- 조태린(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388-410.
- 조태린(2018), 「한국 사회 갈등 구조와 혐오 표현의 문제」, 『한중일 언어를 통해 본 삼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사, 92-106.
- 조태린(2019), 「언어 사전의 정보적 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사전학』 34, 105-126.

- 허재영(2011), 「경멸적 평가어로서의 비속어 형성 과정과 요인 연구」, 『어문론총』 55, 111-134.
- 홍성수(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287-336.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이크로스.
- Kövecses, Zoltán(2010), *Metaphor : a practical introduction*(Second Edi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 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